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제 안 이 유

-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3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
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윤 지 성